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개정이유

- 수해방지 시설인 배수펌프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신규정원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가.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조정(안 제2조)

- 총 정 원 : 785명 → 795명 (증 10명)
 - 집행기관 : 767명 → 777명 (증 10명)
 - 의회사무기구 : 18명 → 18명

나. 부칙중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(안, 부칙 제2조)

- [표1] 의 정원총수 833명 → 843명(증 10명)
 - 집행기관 정원 815명 → 825명(증 10명)
- [표2] 의 정원총수 787명 → 797명(증 10명)
 - 집행기관 정원 769명 → 779명(증 10명)

※ 배수펌프장 정원 승인 내역

구 분	계	전기7급	기능8급	기능9급	기능10급
배수펌프장 관리인력	10명	1명	2명	2명	5명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지방자치법

제103조 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음.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4조 (표준정원의 책정)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·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·도지사는 정원책정의 적정여부 등 그 검토결과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또는 9월에 하여야 한다.

나. 내용타당성

- 동 개정조례안은 재해방지시설인 배수펌프장 관리인력 10명을 행정 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 재해대비등 안전관리를 하기 위하여 관련조례인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.